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기영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이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도록 개정(법률 제17258호, 2020.5.19. 공포, 2020.11.20. 시행)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함

- 1) 법제처의 「과태료 금액 지침」(’19.2.12., 국무회의 보고)에 따라 광주과학기술원법 상 동일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도 과태료 금액 조정이 필요함
- 2)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조정함
- 3) 과태료 상한액을 물가변동률 등 사회·경제적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향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실효성을 높이고, 유사 위반 행위 간 편차를 해소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.

나. 위반행위별로 단일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

- 1) 법제처의 「과태료 금액 지침」은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는 반복 가능성이 낮아 가중제재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위반차수별로 부과금액을 가중하는 방식을 자제하도록 규정함
- 2)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별로 단일 금액을 부과하도록 변경함
- 3) 위반차수별로 부과금액을 가중하는 방식을 위반행위별 단일 금액을 부과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.

다. 과태료 감경 기준을 간소화하여 규정함

- 1)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과태료 감액 기준 간소화가 필요함
- 2) 과태료 감경 기준을 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”와 “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, 정도,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로 변경함
- 3) 유사 입법례와 동일하게 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전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.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,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법 제24조를 위반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광주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29조제1항	500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	
연 락 처	(044) 202 - 4835